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12.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소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1) 경영상담, 교육실시, 마케팅 등
 - 2) 창업, 경영자금 융자에 대한 특별보증지원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관내 총 사업체 39,516개 중 35,690개(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상담, 자문, 교육,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보증제도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사업 등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인용하면 소상공인 84.8%가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금 및 보증 지원 확대’가 55.4%로 ‘세제지원’이나 ‘규제개선’보다 많았음
- 하지만 59.6%의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며 조례 제정 시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 호
----------	--------

제출연월일 : 2010.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구 소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실시(안 제4조)
- 다.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안 제5조)
-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6~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기 타
 - (1)입법예고(2010. 9. 30 ~ 10. 20) 결과 : 의견 없음
 - (2)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과 소상공인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역경제과의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